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별채 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지원신청을 할 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사항인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외하고 제출하게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입목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삭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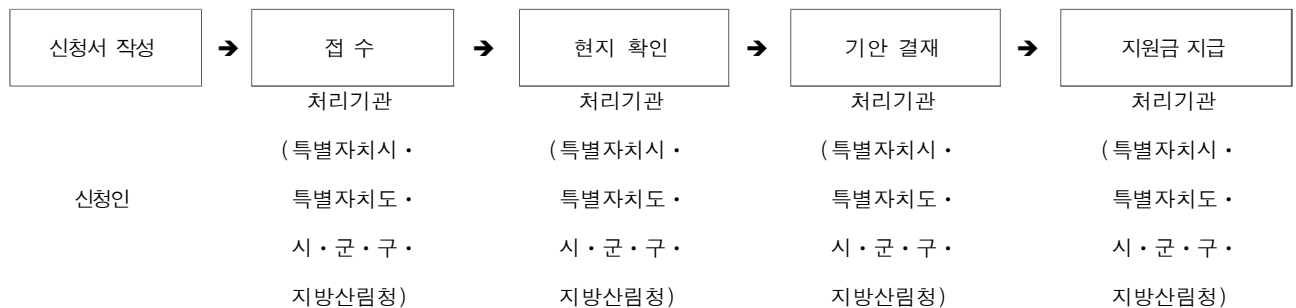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성명: 신청인의 성명(법인명)을 적습니다.
- ② 생년월일: 신청인의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을 적습니다.
- ③ 주소: 신청인의 거주지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신청인의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⑤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신청인과 해당 산지 소유자와의 권리 관계를 적습니다.
- ⑥ 산림 소재지: 해당 산림이 소재하는 시·군·구, 읍·면·동, 리 및 지번을 적습니다.
- ⑦ 토지 소유자: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⑧ 입목 소유자: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⑨ 수종별 입목축적: 수종별로 벌채수량예정조서상 축적을 적되, 세제곱미터(㎥) 단위로 적습니다.

- ⑩ 수종별 잔존재적: 수종별로 잔존구역 내 실제 존치되는 입목의 재적을 적되, 세제곱미터(m^3) 단위로 적습니다.
- ⑪ 벌채구역 면적: 입목벌채의 구역면적을 적되, 수종별 면적의 합계와 동일해야 합니다.
- ⑫ 벌채면적: 벌채구역 면적 내 존치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입목벌채 면적을 적습니다.
- ⑬ 잔존면적: 벌채구역 면적에서 벌채면적을 제외한 존치면적을 적습니다.
- ⑭ 벌채구역 입목축적: 입목벌채를 하기 전 벌채구역 내 전체 입목의 재적을 적되, 수종별 입목축적의 합계와 동일해야 합니다.
- ⑮ 벌채량: 벌채구역 내 실제 벌채되는 지역에서 벌채되는 입목의 재적을 적습니다.
- ⑯ 잔존재적: 잔존면적 내 존치되는 입목의 재적을 적습니다.
- ⑰ 잔존재적 비율: 벌채구역 입목축적 대비 잔존재적을 백분율로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적습니다(지원금의 지급한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를 따릅니다).
- ⑱ 지원금 입금계좌번호: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자 명의로 된 입금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3(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영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5조의3(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u>	<u><삭 제></u>